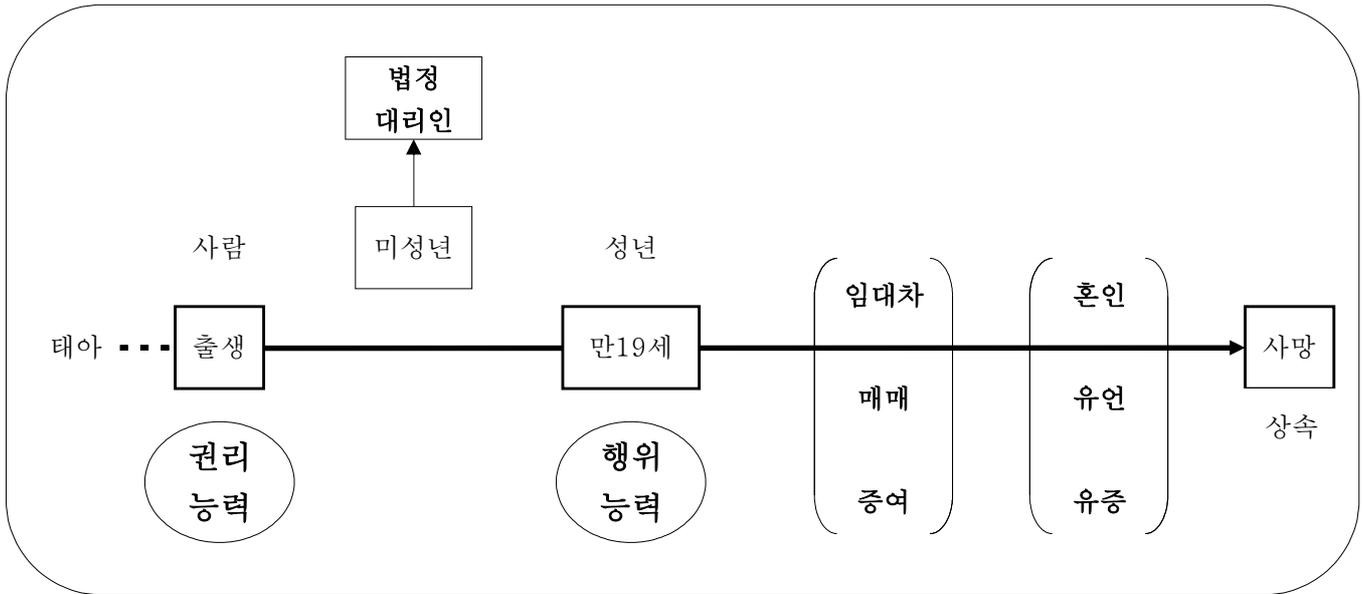


1. 출생에서 사망까지



2. 법률행위 종류 익히기 ~ 반드시 암기 !

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~
1차 면제 받은 동철이 상추먹고 잠에 취해~

증조 할배
매화꽃보고 차차차 앓싸 여행~
현상광고걸린 고위 공직자 교도소에
임종을 맞이하다 ~

이 사실을
사설탐정이 알아내다~

- ▶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~ 유언(유증), 재단법인설립행위, 소유권의 포기
- ▶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~~채무면제, 동의, 철회, 상계, 추인, 취소, 해제(해지)

- ▶ 15개의 쌍방행위(계약) ~ 증여, 조합
매매, 화해
사용대차, 임대차, 소비대차, 여행계약
현상광고, 고용, 위임, 교환, 도급
임치, 종신정기금

- ▶ 합동행위 ~ 사단법인 설립행위

민법체계도 완성판

제563조(매매의 의의)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'약정'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'약정'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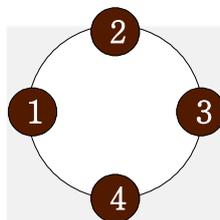
3편 채권
↓
계약의 분류

민법전 있고 ↔ 민법전 없고 ↓ 전형 계약 ↔ 비전형 계약	약정 ↔ 약정 ↓ 낙성 계약 ↔ 요물 계약	채무 ↔ 채무 ↓ 쌍무 계약 ↔ 편무 계약	출연 ↔ 출연 ↓ 유상 계약 ↔ 무상 계약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채무불이행	
이행지체 (최고필요)	이행불능 (최고불요)
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	

1편 총칙
↓
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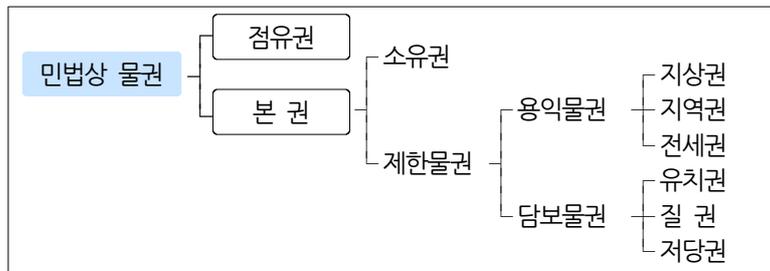
성립요건
당사자 의사표시 목적
↓
불성립 ↔ 성립



효력요건
의능 행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
↓
무효 ↔ 유효 1 2 3 4

제186조(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
2편 물권
↓
물권의 분류



물권적 청구권		
반환 (내놔)	방해제거 (치워)	방해예방 (확 하지마)

무단식재	무단경작	무단신축
------	------	------